퇴직보험 상품요약서

1. 상품 특이 사항

가. 보험 가입 자격 요건

이 보험에 가입하는 단체는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서 정하는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나. 보험료의 종류

1) 기본보험료
계약을 체결 및 각 보험료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로서 협정서 및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재정안정화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내에서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자유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연금충실화보험료
연금급부를 충실화하기 위한 보험료로서 퇴직금관련 규정에 정한 퇴직금과 이 계약의 퇴직급부금과의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금액으로 합니다.

2. 급부 관련 사항

가. 급부 종류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나. 급부금 지급사유

피보험자의 정년/중도/사망/기타 퇴직시 급부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며 수익자인 피보험자는 급부 수급권을 취득합니다.

다. 급부금 지급계산

1) 회사는 급부금 지급사유에 의해 수익자가 급부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회사에 최종 등록된 피보험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적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 전원이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중간 정산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보험료 산출 기초

가. 보험료계산이율

연복리 4.0 %
보험료 및 급부수급권 미취득자에 대한 장래급부채무액 산출시 적용합니다.

나. 준비금부리이율(i_2)

1) 확정금리형

연복리 3.5 %
상품개정을 통한 이율변경시에는 변경전 계약에도 변경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금리연동형

해당책임준비금 산출시 적용하며, 매월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회사의 산출시점 직전 6개월간의 금리연동형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수익률, 회사채수익률, 정기예금이율을 산술평균하여 공시기준이율을 산출하고 향후 예상수익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되, 산출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저한도로 적용)로 매월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2%를 적용하며, 이율체계 또는 최저보증이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전 계약에 대해서도 변경시부터 적용합니다.

다. 예정사업비율

1)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

순보험료에 비례하는 예정사업비율은 계약단체의 납입주기별 순보험료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매 보험료 납입시마다 부가합니다.
또한, 다른 퇴직보험(또는 퇴직신탁)계약의 준비금을 이전받는 경우(다른 취급기관으로부터의 이전 포함)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의 예정사업비율은 0.2%를 부가합니다.

구 분	순보험료	예정사업비율
월납	833 만원이하	1.5%
	833 만원 초과 2,500 만원이하 부분	1.0%
	2,500 만원 초과 4,167 만원이하 부분	0.8%
	4,167 만원 초과 부분	0.6%
3 개월납	2,500 만원이하	1.5%
	2,500 만원 초과 7,500 만원이하 부분	1.0%
	7,500 만원 초과 12,500 만원이하 부분	0.8%
	12,500 만원 초과 부분	0.6%
6 개월납	5,000 만원이하	1.5%
	5,000 만원 초과 15,000 만원이하 부분	1.0%
	15,000 만원 초과 25,000 만원이하 부분	0.8%
	25,000 만원 초과 부분	0.6%
연납	10,000 만원이하	1.5%
	10,000 만원 초과 30,000 만원이하 부분	1.0%
	30,000 만원 초과 50,000 만원이하 부분	0.8%
	50,000 만원 초과 부분	0.6%

2) 책임준비금에 비례하는 부분

책임준비금에 비례하는 예정사업비율은 당해보험년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경과책임준비금에 대하여 다음의 율로 하며, 해당 예정사업비는 매 보험년도 말 책임준비금에서 직접 차감하거나 별도 납입합니다.

경과책임준비금	예정사업비율
10 억이하 부분	0.60%
10 억초과 30 억이하 부분	0.58%
30 억초과 50 억이하 부분	0.55%
50 억초과 100 억이하 부분	0.53%
100 억초과 500 억이하 부분	0.50%
500 억초과 1,000 억이하 부분	0.45%
1,000 억초과 부분	0.40%

4.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가.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산출하여 책임준비금에 더합니다. 다만, 거치연금전환제계약 및 연금지급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계약자 배당금의 산출 및 적립

계약자 배당은 이자율차 배당, 사업비차 배당으로 하며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은 계약자배당준비금(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합니다.

다. 과거 5년간 배당률

구 분	이자율차배당률		사업비차배당률
	확정금리형	금리연동형	
FY2004	1.1% 2.1%	1.0%	40%
FY2003	1.0% 2.0%	1.3%	15%
FY2002	0.4% 1.4%	0.5%	-
FY2001	1.5% 2.5%	0.7%	-
FY2000	0.5%	-	-

라. 계약자배당준비금 부리이율

계약자 배당금은 보험계약별로 보험년도말에 지급하되 배당발생 후 실제 지급시까지는 자산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이율로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되 단, 보험사업자가 정하는 이율은 직전 회계연도 중 판매된 보험상품별 예정이율 중 최저 이율보다 높아야 한다.

5.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사항

퇴직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해약환급금을 다른 취급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취급기관으로 직접지급하며, 해약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한도로 하여 각각 대응하는 피보험자에게 계약 해지시점의 피보험자별 퇴직급여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세부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